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1.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은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안경사의 정의규정 중 주된 업무에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관리, 안경·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굴절검사의 시행 등”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그 의미가 불명확한 “관리” 부분을 삭제하고 “굴절검사의 시행 등”을 현행 법령상 허용되는 굴절검사로 한정하기 위하여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3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안경사”란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 안경·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굴절검사의 시행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조의2(정의) 이 법 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조의2(정의) ---- ----- ----- ---.	제1조의2(정의)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 음)	1.·2. (현행과 같 음)
3. “안경사”란 <u>안경</u> <u>(시력보정용에 한</u> <u>정한다. 이하 같</u> <u>다)의 조제 및 판</u> <u>매와 콘택트렌즈</u> <u>(시력보정용이 아</u> <u>닌 경우를 포함한</u> <u>다. 이하 같다)의</u> <u>판매를 주된 업무</u> <u>로 하는 사람을</u> <u>말한다.</u>	3. “안경사”란 <u>안경</u> <u>(시력보정용에 한</u> <u>정한다. 이하 같</u> <u>다)의 조제·판매</u> <u>및 관리와 콘택트</u> <u>렌즈(시력보정용</u> <u>이 아닌 경우를</u> <u>포함한다. 이하</u> <u>같다)의 판매 및</u> <u>관리, 안경·콘택</u> <u>트렌즈의 도수를</u> <u>조정하기 위한 굴</u> <u>절검사의 시행 등</u> <u>을 주된 업무로</u> <u>하는 사람을 말한</u> <u>다.</u>	3. “안경사”란 <u>안경</u> <u>(시력보정용에 한</u> <u>정한다. 이하 같</u> <u>다)의 조제 및 판</u> <u>매와 콘택트렌즈</u> <u>(시력보정용이 아</u> <u>닌 경우를 포함한</u> <u>다. 이하 같다)의</u> <u>판매, 안경·콘택</u> <u>트렌즈의 도수를</u> <u>조정하기 위한 약</u> <u>제를 사용하지 않</u> <u>는 굴절검사의 시</u> <u>행을 주된 업무로</u> <u>하는 사람을 말한</u> <u>다.</u>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530
----------	------

발의연월일 : 2025. 2. 27.

발 의 자 : 남인순 · 이수진 · 박주민
박홍근 · 문정복 · 장종태
채현일 · 민병덕 · 조승래
서영석 · 허종식 · 이정문
전현희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서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굴절검사까지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안경 등의 판매만을 주된 업무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안경·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실제 안경사의 업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안경·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를 법률상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눈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3호).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그 의미가 불명확한 “관리” 부분을 삭제하고 “굴절검사의 시행 등”을 현행 법령상 허용되는 굴절검사로 한정하기 위하여 자구를 수정함(안 제1조의2제3호).

법률 제 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 중 “판매를”을 “판매, 안경·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굴절검사의 시행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안경사”란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u>판매</u>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조의2(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안경사”란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u>판매, 안경 ·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굴절검사의 시행</u>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